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 이금성

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33호
- 제출자 : 심정수 의원 등 5인
- 제출일 : 2026. 4. 8.
- 회부일 : 2026. 4. 8.

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가 개정(2026. 1. 2.)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별표에서 여비 지급 기준을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, 별지 위촉장 서식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별표 여비 지급 기준 정비
(현행)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부군수 상당액
(개정)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라목 적용
- 별지 위촉장 문구와 서식 정비
- 그 밖의 인용 조문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1

- 비용추계 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6. 4. 9.~4. 16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고, 기존 조례의 인용 오류 및 서식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정비 사항을 담고 있으며,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적절히 수정하고 있음. 특히 여비 규정의 명확화는 외부 위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로서 타당하며, 법령 위반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